

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규정

2018.05.08. 제정

<취업지원센터>

제1조(목적) 동명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대학교 소속 여대생의 체계적인 진로개발과 취업준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여대생 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
2.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탐색을 위한 여대생 특화 진로 및 취업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업무
3. 여대생 진로상담 및 커리어코칭에 관한 업무
4. 젠더의식 강화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세미나 및 캠프 운영에 관한 업무
5. 여대생의 진로 및 취업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
6. 여대생을 위한 기업체·관공서·연구기관·단체 등과의 연계 강화 및 활동에 관한 업무
7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 중에는 여성 교원을 1인 이상 포함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운영지침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.

제6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명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